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자치행정과)

제출일 : 2026. 7.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협회의 운영 활성화와 회원 참여 독려를 위하여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 조항 신설(안 제2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정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회의 운영 활성화와 회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안 제23조의2제4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협회가 각 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상호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의견 공유와 협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은 주민자치 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유사한 성격의 주민참여기구 및 민관협의체 등에서 동일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바, 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단체별 기능·역할 등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제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